

## 9-35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

2008. 2.29. 제정

2015. 3. 1. 개정

2020.11.16. 개정

주무부서 : 교무처 학사팀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「중앙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52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시행세칙은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학점인정)**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학칙 제59조 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

1. 2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2. 3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3. 학사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4. 의학부로 편입한 자는 예과과정 2년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
5. 약학부로 편입한 자는 편입학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, 입학 시 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.
6. 간호학과로 편입한 자는 간호학과 2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7. 사범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이수과목 및 학점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 개인별 인정과목 및 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. 단, 최대 인정학점은 본조 2호에 따른다.

**제4조(교과목 이수)** ① 모든 교과목은 재학 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편입학자는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60조 및 학사운영규정 I 제 67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③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(부)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(부)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학과(부)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(부)장이 명할 수 있다.
- ⑤ 편입학자는 교양과목 이수기준을 면제한다.

**제5조(졸업요건)** 편입학자는 부전공, 복수전공, 전공심화과정, 융합전공,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

**제6조(준용규정)**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편입학생학점인정및교과목이수지침을 전부변경방식으로 개정한다.(2008.2.29)
- ②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- ② (경과조치) 개정시행세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3. 1. 5.>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다만, 2014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 <개정 2015. 3. 1.>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전부개정 2020. 11. 16.>

- ① (시행일)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(학점인정) 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.